



# Samil PwC Monthly Newsletter

August 2024

Hot Topic

한국인의 매운 맛: K-Food



**pwc**

삼일회계법인



# Contents

## Hot Topic

- 한국인의 매운 맛: K-Food 요약본 3

## Sustainability

- Sustainability 국내외 동향 12

## GAAP

- 2024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5년 종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한국공인회계사회) 17

## GA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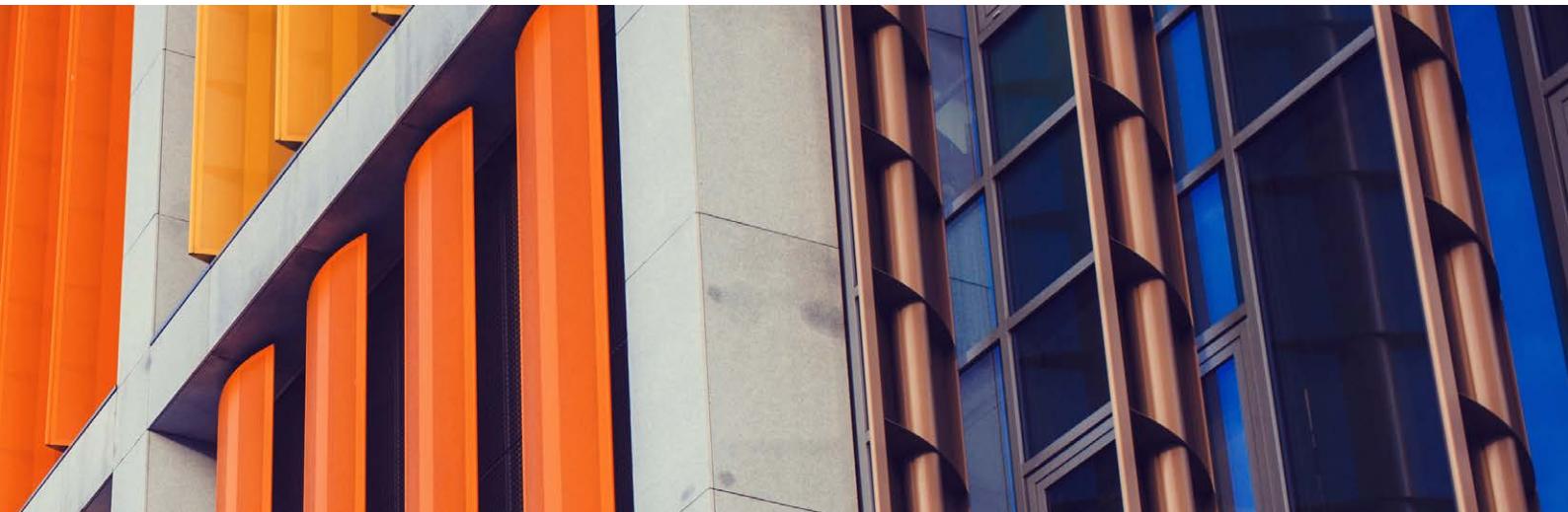
- 2023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안내를 위한 공시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 23
-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금융감독원) 26

## Tax

- 2024년 세법개정안 30

## Governance

- 전사적 위험 관리(ERM) 감독을 위한 이사회 가이드 37



---

## 삼일PwC 이달의 Contents

### Insights



Samil PwC 프리미어 부동산 레터 Vol.11  
(August 2024)

- 수요가 가격을 결정
- 아파트 거래량 감소와 가격 변화

[보러가기 \(Click\)](#)

### YouTube



European hydrogen market trends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유럽 시장 중심으로 본 청정수소 시장 현황

[영상 보러가기 \(Click\)](#)



# Hot Topic

# 한국인의 매운 맛: K-Food (요약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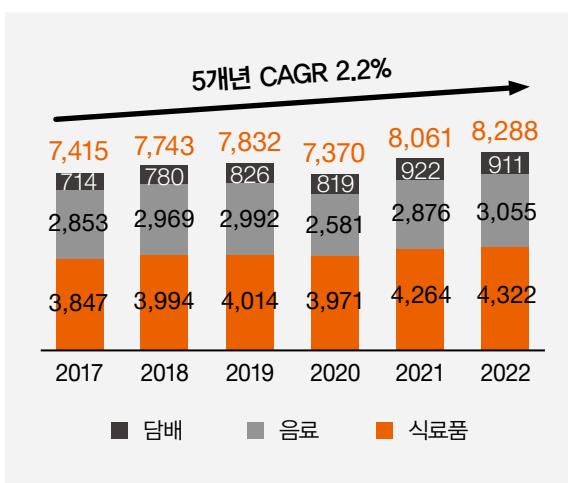
[저자: 삼일PwC경영연구원 이은영 Managing Director]

한국경제의 위상이 높아지고 K-Contents의 파급력이 커짐에 따라, K-Foo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불고기·김치 등의 전통적 음식으로 대변되던 한국음식은 최근 만두·라면·김밥 등으로 품목이 확장되며, 내수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국내 음식료 업계들에게 해외 시장이 새로운 성장 돌파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음식료 산업의 현황 및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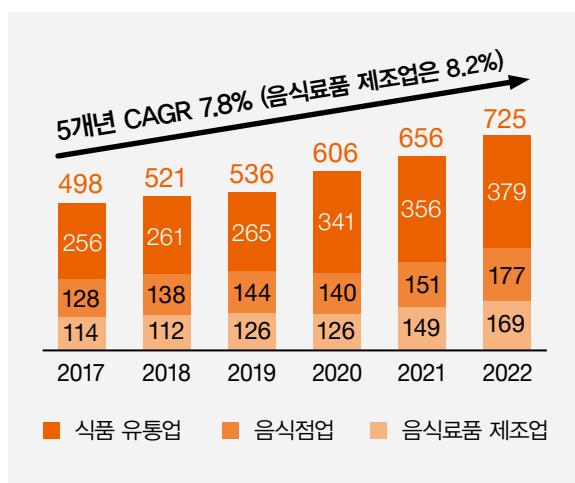
## 1. 음식료 산업 규모

- 글로벌 음식료 시장 규모는 약 8.3조 달러(2022년 기준)으로, 5개년 평균성장을 2.2%의 낮은 성장세
  - ▣ 품목별: 식료품 4.3조 달러(글로벌 시장 내 52%), 음료 3.1조 달러(37%), 담배 0.9조 달러(11%) 순
  - ▣ 시장별: 유럽 30%, 중국 21%, 미국 18% 비중 차지. 한국은 글로벌 내 2% 수준의 시장 규모
- 국내시장은 169조 원(2022년 기준, 음식료품 제조업 기준) 규모로 5개년 평균성장을 8.2%
  - ▣ 글로벌 대비 높은 성장률은 높은 수출증가율(동기간 CAGR 7.4%)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글로벌 음식료 산업 규모 (단위: 십억 달러)



국내 식료 산업(유통 및 음식점업 포함) 규모 (단위: 조 원)



※ 출처: 식품산업통계

## 2. 한국의 음식료 산업 현황 및 전망

### ■ 산업 현황

#### ■ 2023년은 매출 성장 둔화 & 높은 투입원가(곡물가) 지속으로 마진 하락

- 매출: 팬데믹에도 안정적 성장세 시현하였으나, 지속된 인플레이션( $P \uparrow$ )에 따른 가격 저항이 발생( $Q \downarrow$ ) 하며 2023년 성장 둔화
- 매출원가: 음식료 기업 매출원가에서 원재료비(곡물가 등)가 차지하는 비중은 75% 수준, 2020년 하반기부터 곡물가 상승하며 매출원가 상승 …> 매출총이익률(GPM) 하락
- 영업이익: 매출원가 상승에도 판촉비 축소 등을 통해 5% 수준의 안정적 영업이익률(OPM)을 유지해 왔으나, 2023년은 매출 부진에 따라 마진 감소

#### ■ 업체별로는 곡물가 상승에 따라 소재\* 비중이 높은 기업의 이익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다만, 2023년 하반기부터 곡물가 하락 움직임에 따라 소재업종의 이익률이 먼저 반등하기 시작

\* 소재: 식품을 만드는 데 바탕이 되는 가공을 하지 않은 본질적 재료(밀가루, 유지, 설탕 등)



## 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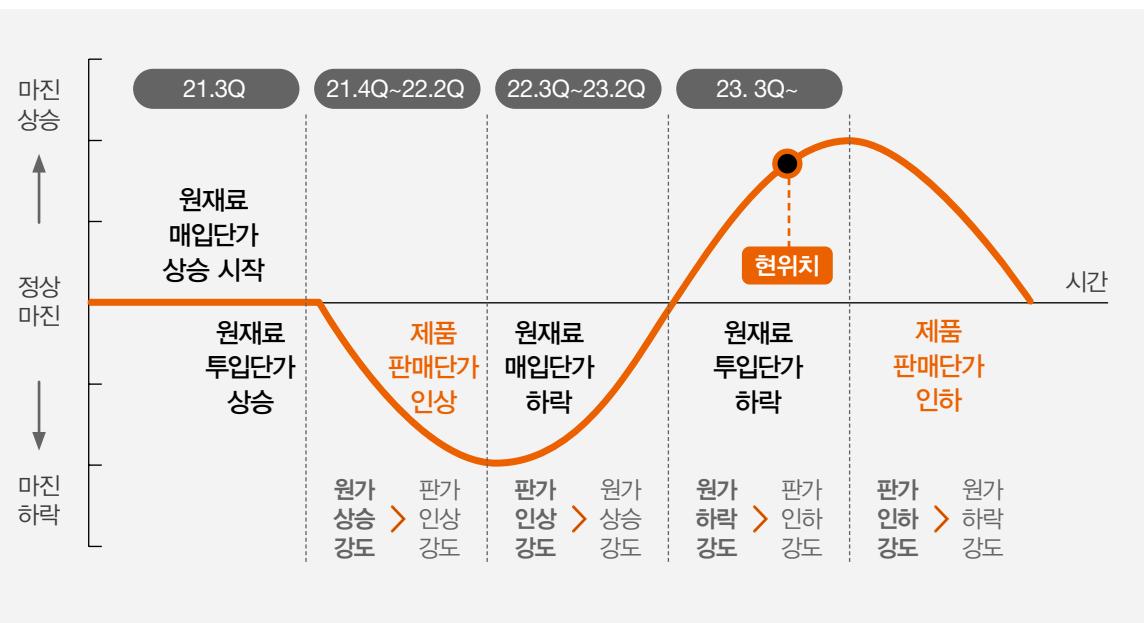
### ① P(가격), Q(물량), C(비용) 분석:

- 가격(P) 상승 + 수출을 통한 성장 동력(Q) 확보 + 원재료가(C) 하락 ...> 기업가치 Level-up

수익 요소	방향성	내용
Pri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의 식품가격 규제로 인한 대외적 가격 인하 압력 존재</li> <li>다만, 제품 리뉴얼 및 프리미엄 제품 출시에 따른 간접적 판가 조절, 용량 축소, 할인율 축소 등의 다양한 조치로 우회적 가격 상승 지속</li> </ul>
Quant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수: 인구감소 및 경제성장을 하락에 따라 성장 정체</li> <li>해외: K-Food 열풍 지속되며, 해외부문 매출 증가</li> </ul>
Cos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곡물가 하락에 따른 원재료 투입단가 하락 ...&gt; 원가율 개선</li> </ul>

※ 출처: 삼일PwC경영연구원

### 음식료 업종 이익 Cycle: 2023년 3분기 부터 상승기 진입



※ 출처: 삼일PwC경영연구원

## ② P - 상승폭 둔화

- 음식료 가격은 원재료 가격 상승기에 후행적으로 제품가격이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비자 물가에 밀접하게 연관된 식품업의 특성상, 가격 책정 시 정부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함
- 다만, 음식료 업계는 제품 리뉴얼 및 프리미엄 제품 출시를 통한 간접적 판가 조절, 할인 축소 등의 다양한 우회적 가격 상승 조치로 정부의 가격 동결·인하 영향 최소화

## ③ Q - 내수 시장 정체 vs. 해외 진출 확대

- **내수:** 인구 감소 및 경제 성장을 하락에 따라 음식료 내수 시장 정체
- **해외:**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해외 진출, 2020년대에 들어 음식료 업종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입지 구축
  - 2023년 한국 음식료 수출액은 107억 달러로, 2019년 수출액(82억 달러) 대비 31% 증가. 해외 현지 생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점 고려 시, 해외 부문 총 성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
  - 지역별로는 아시아 65%, 북·중미 29%, 유럽 10% 순(2023년 수출액 기준) K-Culture 확산과 함께 시장 다변화: 2019년 대비 아시아 비중 감소(-4%pt) vs. 북미 증가(+4%pt)

## ④ C - 원재료가 하락

- **음식료 제조업은 곡물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 음식료 산업의 매출 원가율은 78%이며, 원가는(100% 가정 시) 원재료비 75.9%, 노무비 7.7%, 경비 16.4%로 구성(한국은행, 2017년 10월)
  - 쌀 이외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며, 이에 따라 국제 곡물가 및 환율·해상 운임에 영향받음
  - 원재료 가격이 국내 음식료 제품의 투입 단가에 반영되기까지는 다소의 시차 발생(6개월 내외)
- **주요 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원재료가 하향 추이**
  - **곡물가:** 2020년 하반기 이후 지속 상승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
  - **해상운임(BDI<sup>\*</sup>):** 팬데믹 기간 급등(2020년 1월:487 2021년 9월: 5,167)하였으나, 이후 하향 안정화
  - **환율:**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국제 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달러 강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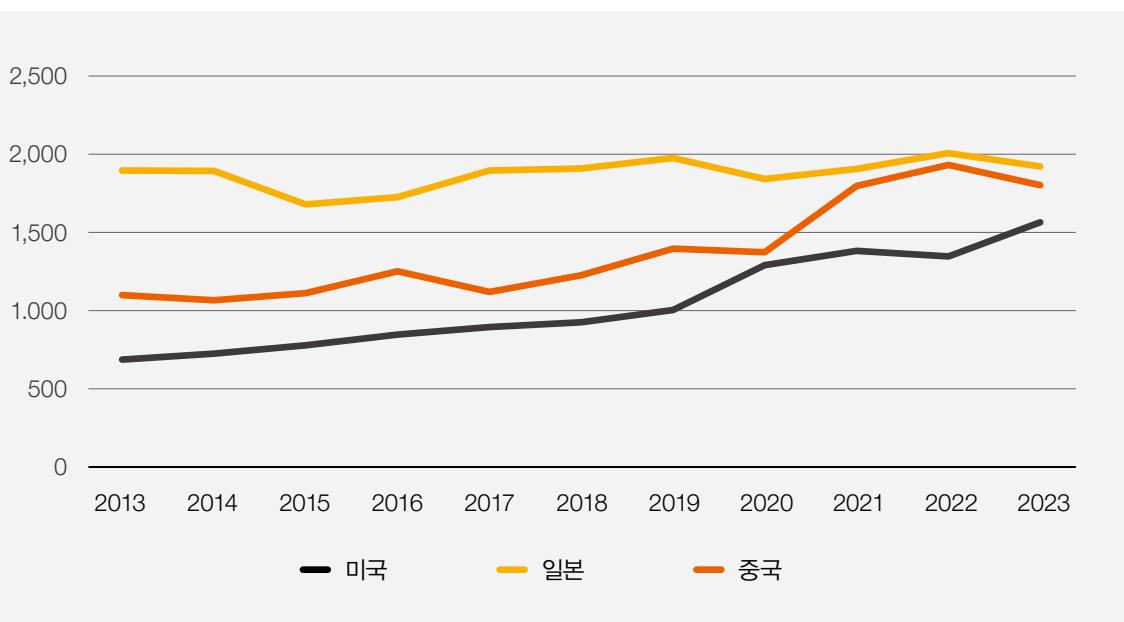
\* BDI(Baltic Dry Index): 석탄, 철광석, 곡물 등 원자재를 싣는 대형 선박의 화물운임 지수

### 3. 세계로 가는 K-Food: 수출

#### ■ 시장 현황

- 음식료 수출액은 2023년 107억 달러로 2013년 67억 달러 대비 60% 성장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성장 가속화. 많은 제품들이 해외 현지공장에서 생산 후 판매되는 점 고려 시, K-Food 성장률은 더 높을 것으로 판단
- 지역별로 보면, 일본(19억 달러, 총 수출 중 18%), 중국(18억 달러, 17%), 미국(16억 달러, 15%) 순 (2023년 기준)
  - 일본: 10년간 수출 금액 정체되며, 음식료 수출 내 차지하는 비중 감소(2013년 29% → 2023년 18%)
  - 중국: 한류 열풍과 함께 201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10개년 CAGR 5.3%)
  - 미국: K-Culture 확산과 더불어 2020년을 전후로 급격히 성장(10개년 CAGR 9.3%)

주요 국가별 K-Food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품목별로는 가공식품(58%), 어패류(19%), 음료(10%), 김(7%) 순 비중 차지 (2023년 기준)

## ■ 기업별 동향

- 국내 음식료 기업 중 해외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은 삼양식품, 오리온,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주요 음식료 기업 해외 매출 비중** (단위: 십억 원, 2023년 기준)

	매출	해외 매출	해외 비중	주력 품목
삼양식품	1,165	809	69%	라면
오리온	2,912	1,857	64%	제과
CJ제일제당	11,264	5,386	48%	가공식품 (만두, 피자, 치킨, 김, 즉석밥 등)
농심	3,410	1,250	37%	라면
대상	3,218	1,038	32%	가공식품 (김치, 소스 등)
풀무원	2,329	569	24%	가공식품 (김치, 냉동식품 등)
롯데웰푸드	3,300	791	24%	제과, 빙과
롯데칠성	3,224	716	22%	음료
SPC삼립	3,433	534	16%	제빵
삼양사	1,597	221	14%	소재 (밀가루, 전분당, 유지 등)

※ 출처: 각 사, 금감원 전자공시, 기사 종합

- 제과 부문은 아시아 신흥시장을, 가공식품은 미국과 유럽지역 등 서구권에 주력

- 미국에서는 CJ제일제당(가공식품)과 농심(라면), 아시아에서는 오리온(과자)이 시장 선도

- 주요 업체들은 국내 생산 후 수출이라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 현지화에 초점

- 제품: 현지인 입맛 고려하여 국내 제품 변형
- 생산: 현지공장 신설 및 증설, 현지업체 M&A 진행

## 시장 전망

### ■ 향후 K-Food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 ① 지난 20년간 정체된 내수시장에서 치열하게 생존한 기업들은 고도의 제품 경쟁력 보유
- ② 과자·기호 식품을 넘어 맛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김치·식사 대용식품 등으로 해외 소비자의 관심이 확대되며, 다양한 품목에 대한 수출 잠재력 확보
- ③ 드라마·음악 등 K-Contents 완성도 향상되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지속
- ④ 인플레이션 심화로 높아진 외식물가에 대한 부담 …> 내식 수요 증가 …> 냉동식품 수요 증가

\* 북미 지역 물가(1인 기준): 일반 식당 34\$, 햄버거 체인 14\$ vs 신라면 1.2\$, 불닭볶음면 1.4\$

### ■ 정부도 K-Food + 수출 혁신 전략(2024년 2월)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230억 달러 수출 목표 제시

\* 2023년 121억 달러 대비 90% 성장, 4개년 CAGR 17%



## 4. 결론 및 Implication

### ■ 해외 부문은 음식료 업종의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 인구 감소, 경제성장을 둔화로 인해 음식료 내수시장 성장 정체
- 성장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난 30여년 간 음식료 기업들은 해외진출을 진행했으며, K-Culture 인기와 더불어 음식료 업종의 해외 성장 본격화
- 현재는 해외시장 진출 초창기 수준으로, 지역 및 카테고리 확장 가능성 고려 시, 향후 고성장 지속 가능
- 제품 현지화 + 유통망 확보 + 마케팅 전략의 성공적 결합 시 K-Food의 파급력 증대

### ■ K-Food 확산을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전략 필요

#### K-Food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제언

정부	기업
<p><b>① 국가 간 협력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간 경제외교와 연계하여 한국 음식료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마련 … 국내 인증을 기반으로 수출 상대국에서 수입절차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li> <li>• 각국의 수입규정에 맞는 정보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규제 변화 실시간 업데이트</li> <li>• 수출 보험 등 제반 지원 확대</li> </ul> <p><b>② 물류 인프라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저온창고, 운송 차량 등 지원</li> <li>• 해외: 물류센터 및 콜드체인 확보</li> </ul> <p><b>③ 기업 간, 업종 간 협업 장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중소기업 협업 노력 및 인센티브 제공 … 대기업 판로를 중소기업이 이용, 신시장 공동 마케팅, 공동 브랜드 개발 등</li> <li>• K-Food 인기에 맞춰 전후방산업(농기계, 스마트 팜 등 농업기술) 수출 확산 지원</li> </ul>	<p><b>① 핵심 상품(Killer Item) 발굴 및 제품 현지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식문화(이슬람의 돼지고기, 인도의 소고기 기피 등), 한국문화에 대한 노출도 등을 고려 하여 공략 가능한 핵심 상품군 선정</li> <li>• 현지인 입맛, 인프라(콜드체인), 원재료 수급 등 반영하여 현지화</li> </ul> <p><b>② 시장 확대 vs 세분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확대(신규시장): 중동·남미·인도 등 인구 증가가 지속되는 시장 공략</li> <li>• 세분화(선진시장): 비건, 다이어트족 등을 고려 한 시장 세분화(제로 식품 등)</li> </ul> <p><b>③ 브랜드 고유성 확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치, 비빔밥과 같이 K-Food 고유명칭* 사용 하여 종장기적 독자성 확보</li> </ul> <p>* 만두: Korean dumpling … Mandu  * 고추장: Red pepper paste … Gochujang  * 김밥: Korean sushi, Korean roll … Kimbap</p>

#### 관련 자료 보러가기

본 자료는 삼일PwC경영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인의 매운 맛: K-Food」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및 삼일Pw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매운 맛: K-Food \(Click\)](#)



# Sustainability

# Sustainability 국내외 동향

[저자: Sustainability Platform 이진규 Partner]

## EU 기업의 CSRD 공시 준비 현황

PwC는 EU CSRD·ESRS\*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하고 있는 30개국 이상의 글로벌 기업 임원진 5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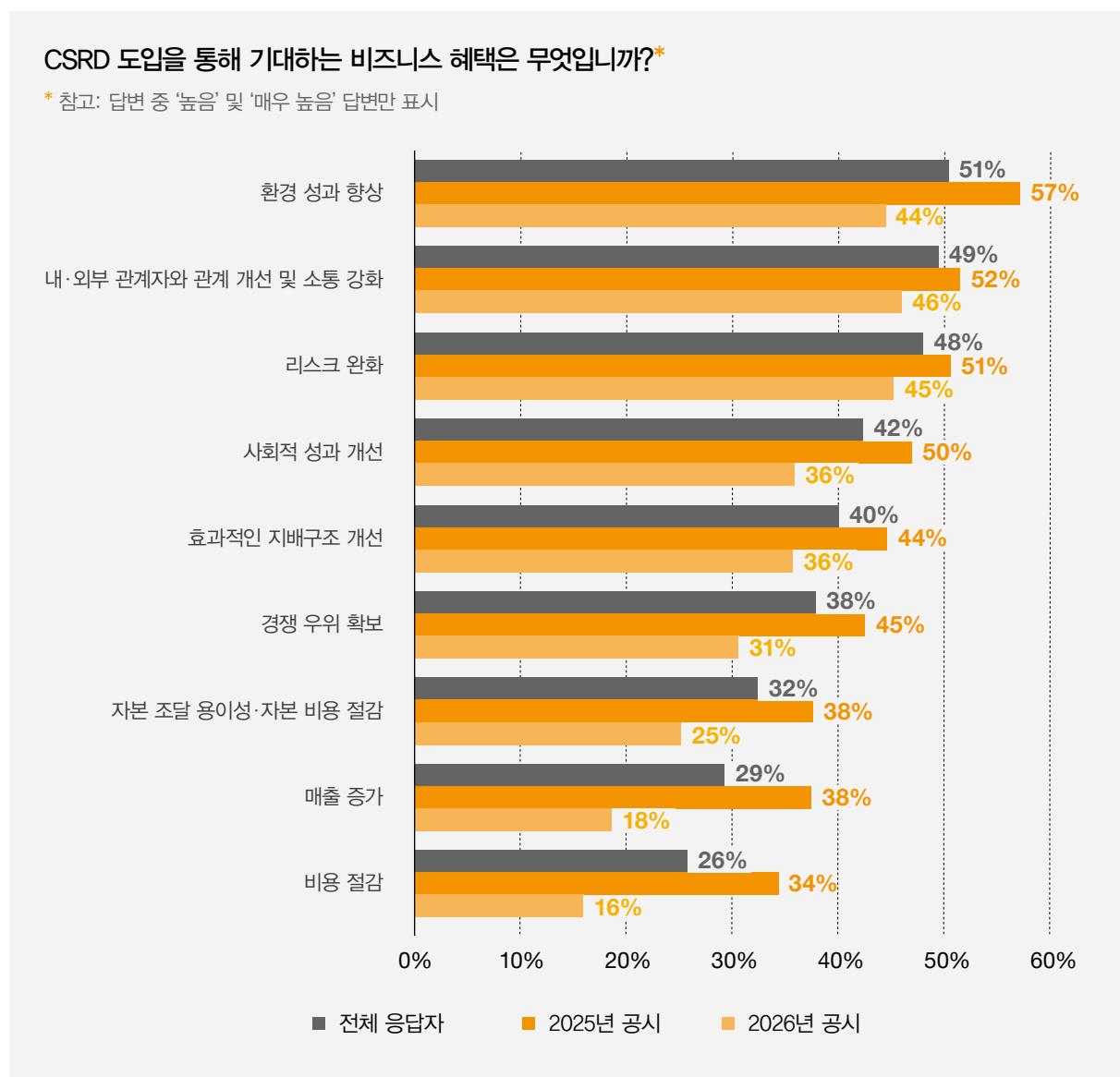
\*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EU의 기업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CSRD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 환경성과 향상 및 CSRD 통해 매출 증가와 비용 절감까지 기대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CSRD 도입을 통해 더 나은 환경 성과(51%), 내·외부 관계자와 관계 개선 및 소통 강화(49%), 리스크 완화(48%) 등 여러 비즈니스 혜택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10명 중 3명은 매출 증가(29%)와 비용 절감(26%) 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기업이 2026년 공시 예정 기업보다 CSRD 도입에 따른 효과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CSRD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어떻게 창출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아직 갈 길 먼 지속가능성 공시… 단계별 사전 준비가 해답

응답자의 90% 이상은 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 제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으나, 완벽한 공시를 위해서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기업은 공시 이행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한 과제로 ‘데이터 가용성과 품질(59%)’, ‘가치 사슬 정보(57%)’, ‘인력 부재(50%)’ 등을 뽑았습니다.

게다가 공시 기준 파악부터 시작해 공시 초안 준비까지 공시를 위해 필요한 단계별 사전 준비를 모두 완료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준비 과정을 구체화한 기업 일수록 CSRD 대응에 더 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CSRD 공시 준비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확신한 기업일수록 공시 기준 파악, 이중 중요성 평가와 공시 갭(Gap) 분석 등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중 중요성 평가’와 ‘제3자 인증 전문가 참여’ 활발

PwC는 EU CSRD 의무 이행 사항중 ‘이중 중요성 평가’와 ‘제3자 인증’ 현황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응답자의 90%는 공시 업무 효율화와 보고서 작성에 부담을 줄여주는 이중 중요성 평가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PwC는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중요성 평가 전과 후를 기준으로 ‘영향·위험·기회(IROs)’ 평가 개수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한 결과, 중요성 평가 후 100개 이상의 IROs를 평가한다는 기업의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고, 20개 미만의 IROs를 평가한다는 기업의 비율은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응답자의 약 80%는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기관 및 전문가가 초기 단계부터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보고서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정보를 인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응답자의 49%는 기업의 기존 재무보고서 검토를 담당하는 감사인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도 검토한다고 답변했고, 기존 재무 감사인과 다른 회사에 소속된 감사인이 인증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14%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감사인이나 회계법인이 아닌 환경 전문가, 지속가능성 컨설턴트 등 기타 독립된 전문가가 인증하는 비율은 16%로 나타났습니다.

## CSRD는 규제 준수를 넘어 가치 실현을 위한 이정표될 것

EU CSRD를 포함한 유럽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행동 변화’입니다.

기업은 규제 준수를 넘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EU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과 규제 간 유기적 연관성과 법적 일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준수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기업에게 호재가 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CSRD·ESRS에 기반한 공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치사슬 전반의 탄소배출량 현황을 추적하여 EU 탄소국경제도와 미국 청정경쟁법 등으로 대표되는 탄소 관련 규제에 대응하고, 비용 절감 및 시장 내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즉, 기업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데 CSRD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CSRD 도입 후 초기 몇 년 동안 공시 과도기를 겪게 될 것이며,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 후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SRD 이행은 기업에게만 요구되는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규제 기관,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해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관련 자료 보러가기 (Click)

[EU 기업의 CSRD 준비 현황 보고서 – \[삼일PwC Sustainability Newsletter Vol.21\]](#)





# GAAP

회계



# 2024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5년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회사 등 제외)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예고하고, 2025년 중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25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계약 및 소송 등에 따른  
자원유출가능성 및 금액의 추정

- 충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의 적정성
-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2.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 경제적효익의 존재 여부 확인

- 내부창출 무형자산 등 인식 및 측정의 적정성
-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

3.

수익인식(본인·대리인, 총액·순액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거래의 실질 내용과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주요지표 및 보조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대리인 판단
- 수익인식기준 충족 여부 검토

4.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자산 및 부채의 유동성 분류 검토

-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성 분류
- 차입약정사항 및 추가 합의내용 등에 유의

## 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 (선정 배경) 판매 후 품질 보증, 손실부담계약, 소송 등과 관련하여 기업이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하여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있고, 이를 간과하는 오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회계오류 예시

- 기계장치 제조업체 A는 제품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불량 발생에 따라 품질보증비용의 지출이 예상됨에도 거래처와의 분쟁악화 가능성, 보상 경험률 자료부족 등 측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충당부채 미계상
- B사는 1심에서 패소하고 기말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충당부채를 미계상
- 부동산 건설 시공사인 C는 시행사인 D에 대한 PF채무 인수 약정과 관련한 우발부채 및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 공시 하지 아니함
- E사는 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

- (회계처리 유의사항) 충당부채 인식·측정의 적정성, 우발부채 주석공시 누락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

(1) **충당부채 인식:** 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후에 발생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포함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불확실성, 현재가치 및 변동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 선의 추정치로 인식

\*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More Likely Than Not to Occur)에 자원의 유출이나 그 밖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Probable)고 보고 있음

(2) **우발부채 공시:** 상시적·비상시적 업무관계, 계약 및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우발부채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또한, 기존의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추정 금액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반영 될 수 있도록 함

## 2.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 **(선정 배경)**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등)은 자산의 성격상 인식·평가와 관련하여 주관적인 추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회계오류 예시

- 제약·바이오업종을 영위하는 F사는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약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내부창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
- 의류제조업체 G사는 20X1년에 사업다각화를 위해 화장품제조업체인 B사를 흡수 합병하고 영업권을 계상하였으나, 20X4년 관련 화장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어 화장품 매출이 급감하고 관련 매장을 철수하는 등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음에도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하여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함
- 건설자재 제조업체인 H사는 건설자재를 납품하고 거래대금 대신 수취한 골프장회원권(무형자산으로 분류)에 대하여,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골프장회원권 공정가치가 장부가 대비 50% 하락하여 손상차손 인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무형자산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아니함

- **(회계처리 유의사항)**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자산화 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매년 손상검토를 실시하고 회수가능가액 추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활용을 고려할 필요

- 특히,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경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미래경제적 효익의 창출 방법의 제시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엄격한 점검이 요구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2018년 9월 19일, 금융위)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2022년 9월 23일, 금융위)

### 3. 수익인식(본인·대리인, 총액·순액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 (선정 배경)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 대하여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였는지는 경제적 실질 (본인·대리인의 구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관행 또는 법적 소유권의 이전 등 형식적인 요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수익을 과대 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 구매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구매자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판매수수료 등)이라면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함에도 당기순이익이나 자기자본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순액으로 계상하는 사례가 발생

#### 회계오류 예시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I사는 J사로부터 부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공급(유상사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다시 J사에게 납품하고 있으며, 관련 계약 내용에 따르면 수령한 원재료는 J사의 동의 없이 전용하거나 제3자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가 불가능하고 원재료 대금은 제품 납품 이후에 제품 가격에서 원재료 대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고 임가공용역만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원재료 입고 시 매입으로, 공급 시에는 원재료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매출로 회계처리
-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K사는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면서 백화점·마트 및 위탁대리점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매출과 관련 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래총액에서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는 거래관행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래 총액을 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동 백화점에 지급한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과 판매관리비(지급수수료)를 과소계상
-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L사는 대리점과 위탁가맹계약(매장재고: 회사소유, 매장 운영비: 회사 부담 등)을 체결하고 판매관리비를 부담하는 등 회사의 책임 하에 직접 운영하고 위탁가맹점주에게는 약정된 수수료 만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M사는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위탁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장운영비용을 회사의 판매 관리비로 인식하지 아니함

- (회계처리 유의사항) 수익을 인식·측정함에 있어 계약 조건과 거래의 형태 등 모든 관련사실과 상황(통제 또는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 등)을 판단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법적인 소유권의 이전 등 형식적 요건만으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4.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 (선정 배경) 기업은 투자자 등에게 단기채무지급능력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고, 유동성비율이 기업의 재무건전성 판단을 위한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주의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 등으로 인해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

### 회계오류 예시

- N사는 20X1년도에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이 부여된 신주인수권부사채(만기 4년 6개월)를 발행하였으나, 20X1년도 보고기간말 현재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가능 시점이 12개월 이내이고 회사는 조기상환청구를거부할 수 없으므로, 유동부채 분류요건을 충족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로 분류
- O사는 자금력이 부족한 해외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정상적인 채권회수가 되지 못하여 향후 10년간 회수 가능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인식하는 과정에서, 해당 채권의 실현시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유동자산으로 분류
- P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여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차입금을 상회하는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최근까지 차입금 차환 및 대출 연장이 되지 않은 사례가 없어 유동부채로의 대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장기차입금으로 분류

- (회계처리 유의사항) 자산·부채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유동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특히 자산은 비유동자산이 유동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고 부채는 유동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1) 유동자산의 분류: 현금및현금성자산\*,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 예상 또는 판매·소비목적 보유 자산,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실현 예상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

\* 사용제한기간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

- 장기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 증권 등의 비유동자산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

- (2) 유동부채의 분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예상 부채,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 및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

\*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비유동부채 중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

### 관련 자료 보러가기 (Click)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언론보도

「2024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5년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 [한국공인회계사회, 2024. 6. 25]



# GAAS

회계 관련 감독기관 동향

# 2023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안내를 위한 공시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

##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 후 점검 실시
  - 올해는 2023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2개 항목)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 실적 등 비재무사항(2개 항목)을 중점 점검
-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
  - 미흡사항이 다수 있거나 기재를 누락한 기업은 2023년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토록 지도함

## 2.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 (1) 재무사항

- (점검 대상)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전년도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된 회사 등 총 258개사를 재무사항 점검 대상으로 선정
  - 2024년 2월 보도자료(2023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를 통해 사전 예고한 12개 항목을 중점 점검
- (주요 미흡항목)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외부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에 대해 기재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 ①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관련하여 공시서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기재 누락
    - 대손충당금 관련: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미기재
    - 재고자산 관련: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현황, 재고자산 실사현황\* 등 미기재

\* 실사일자, 재고실사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등의 참여 및 입회 여부,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기타 재고자산의 담보제공 여부 등 투자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감사의견,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핵심감사사항 등 외부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 등에 대해 기재 누락
- ③ 감사용역과 관련한 감사보수·감사시간의 기재 누락
- ④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을 기재 누락
- ⑤ 요약재무정보 및 요약연결재무정보 기재시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등 기재 누락

#### ■ 재무사항 작성 관련 당부사항

- 대손충당금·재고자산 등은 재무제표 주석에도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항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
- 감사보고서 감사의견·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고서에서 기재된 내용을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할 필요

#### (2) 비재무사항 -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 (점검 대상) 2023년 중 증권 발행 법인 중 과거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있었던 법인 등 총 112개 사를 선정
  - 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재내용 점검
- (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주요 미흡항목)
  - ① 조달자금 사용계획과 사용내역 간 차이 발생사유 또는 ② 미사용자금의 구체적인 보관방법 및 향후계획을 미기재하거나 ③ 자금사용 용도별 금액을 구분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됨
-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관련 주요 미흡항목)
  - ① 실투자기간, ② 운용상품명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작성 관련 당부사항
  - 발행공사\*와 사업보고서 간 자금사용계획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
  - 자금사용계획의 '사용용도'와 실제 자금사용 내역의 '내용'은 시설자금(공장 건설), 운영자금(임금 지급) 등과 같이 자금사용 상세내용을 기재할 필요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조달자금 중 미사용자금이 있는 경우 보관방법 및 향후 사용계획, 미사용 자금 운용내역을 반드시 기재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 (3) 비재무사항 - 합병 등의 사후정보

- **(점검 대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스팩합병 상장기업 중 2023년을 실적 추정기간의 1차연도\* 또는 2차연도\*로 산정한 31개 사 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재내용 점검
  - 예측치·실적치 등 기재 여부, 괴리를 수치·부호 등 기재 적정성 및 항목별 괴리를 발생 원인 등 기재 충실도를 점검
-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11-4-8②)이 1차연도 및 2차연도의 예측치와 실적치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
- **(예측치·실적치 등 기재 여부 관련 주요 미흡항목)** 합병 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를 미기재하거나 합병 등의 사후정보 1차연도 기산점을 오기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 **(괴리를 수치·부호 등 기재 적정성 관련 주요 미흡항목)** 괴리를 산정 시 기준재무제표를 잘못 선정하거나 괴리를 수치 및 부호를 오기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 **(항목별 괴리를 발생 원인 등 기재 충실도 관련 주요 미흡항목)** 괴리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는 그 발생원인을 상세하게 별도로 기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미기재하거나, 미흡하게 기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 **합병 등의 사후정보 작성 관련 당부사항**
  - 공시정보 이용자가 합병등의 사후정보 내용을 통해 당시 외부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예측치·실적치 괴리율의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 필요



#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금융감독원)

## 1. 개요

-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하 ‘임원 등’)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본인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 등’)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음
-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신설 제도 준수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 이에 금융당국은 ①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②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

## 2.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주요 내용

- 은행과 지주회사 중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음
-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
  -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
  -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
  -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

### 3.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 주요 내용

- 향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고려요소 및 기준 등을 정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이하 「운영지침(안)」)을 마련
- 「위법행위 고려요소」로서 ①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와 ② 「위법행위의 결과」 등 2가지를 고려할 예정이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상 기관에 대한 제재 사유, 과거 검사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하여 8개의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

#### ‘위법행위 고려요소’의 구성

고려요소	세부 기준	참고 사례
(1) 위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	① 관리의무의 미이행	DLF 불완전판매
	② 임원 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③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사모펀드 사태, 선물계좌 불법 대여
	④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장기간 횡령, 반복적 작업대출
	⑤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DLF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사태, 횡령 재발
(2) 위법행위의 결과	①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대규모 불완전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
	②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	사모펀드 사태
	③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사모펀드·DLF 사태



-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는 제재조치의 감면을 위한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그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를 말하며, 상당한 주의 여부는 임원 등이 ①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가능 하였는지 여부(예측가능성)와 ②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결과 회피)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며, 4가지 주요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예정

### ‘조치의 실효성 유무’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주요 고려요인	내용
①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 여부	업무 관련 리스크 요인,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인식·예측 여부, 인사이동 등 책무의 추가·변경 시 적절한 리스크 파악 노력 등 고려
②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점검체계의 구축·운영 및 점검 수행 등의 적절한 조치의 이행 여부	내부통제기준의 효과적 집행·운영·준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점검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여부, 법령 등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의 수행, 점검결과에 대한 문제제기, 개선 등 합리적 조치 등 이행 여부 등 고려
③ 내부통제 등의 개선 노력 및 성과	내부통제 등의 개선 실적 등 (인력·조직의 조정,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한 교육·훈련의 지시 등)
④ 의사결정 절차·과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유무	의사결정 규칙의 명확성, 의사결정 과정이 객관적 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문서에 의한 투명한 관리 여부 등 고려

- 향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운영지침(안)에 따라 ① 위법행위 요소로서 위법 행위의 증대성과 ② 행위자 책임 관련 요소로서 상당한 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재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최종 조치수준은 지배구조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결정 할 예정



## 4. 향후 일정

- 2024년 8월 30일까지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동 운영지침(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는 각 금융업권별 협회를 통해 제출 가능



# Tax

(Samil PwC - Tax News Flash, July 2024)



# 2024년 세법개정안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 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중소기업에서 부동산 임대업 제외 등의 증가요인과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등 조정, 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등의 감소요인에 따라 약 △43,515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구분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투자·고용 지역발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국가전략기술 등 R&amp;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2024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li><li>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추가공제율 상향(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 ... 10%)</li><li>중견기업 규모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R&amp;D 세액공제 5배)로 조정 및 부동산임대업의 중견기업 제외</li><li>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3년 ... 5년)·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2년 추가 유예(3년 ... 7년)</li><li>연결납세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 ... 이후 5년간)</li><li>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 일반·신성장·원천·국가전략기술 R&amp;D 세액공제율 점감구조 도입</li><li>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일반·신성장·원천·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점감구조 도입</li><li>주된 시간을 국가전략·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입한 인간비의 국가전략·신성장·원천기술 R&amp;D 세액 공제 안분 적용</li><li>:</li></ul>

구분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투자·고용 지역발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amp;D시설 임차료·기술정보비 등의 국가전략·신성장·원천기술 R&amp;D 세액공제 적용</li> <li>R&amp;D 세액공제 대상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확대(문화상품 제작 목적 한정 ... 목적 제한 폐지)</li> <li>강사·교육생 등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훈련수당 등 인력개발비의 R&amp;D 세액 공제 적용</li> <li>R&amp;D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5년 ... 3년)</li> <li>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 확대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정률 세액공제 도입</li> <li>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유지시 1년 추가공제로 대체·고용인원 계산 단순화 등</li> <li>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요건 완화 (내국인 공동 100% 출자 외국자회사 포함·지분율 산정시 현지법률 등에 의한 현지 정부 등의 의무 보유 지분 제외)</li> <li>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024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li> <li>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종부세 과세특례 신설</li> </ul>
② 기업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기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확대 및 공제한도 인상</li> <li>기업상속공제·기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대상 사업용 자산 확대(임직원 임대주택·학자금·주택 자금 포함)</li> <li>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폐지</li> <li>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2024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및 운항일 이익 조정 등 제도 재설계</li> <li>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구주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과세특례 신설</li> <li>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비과세·분할납부·양도소득 과세이연) 적용기한 3년 연장 (2024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li> <li>자기주식 관련 적격 인적분할 요건 합리화(분할법인 자기주식에 분할신설법인 주식 미배정 시 적격 분할 인정)</li> </ul>
③ 자본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주환원 확대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세액공제 및 개인주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과세 특례 신설</li> <li>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li> <li>일반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확대 및 국내 투자형 ISA 신설</li> <li>조각 투자상품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 및 조각 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li> <li>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적용시 부동산투자회사 자산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li> <li>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 합리화(펀드 이익 계산 시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ETN 거래 또는 평가이익 포함)</li> </ul>

## 2. 민생경제 회복

구분	개정안 주요 내용
① 결혼 출산 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혼인 신고 거주자 1인당 생애 1회 50만 원 세액공제)</li> <li>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무주택 세대주 외 배우자 추가</li> <li>혼인에 의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부세 적용시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 → 10년)</li> <li>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의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2024년은 2021년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한 지급분까지 적용)</li> <li>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확대(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 30만 원 → 25만 원·30만 원·40만 원)</li> </ul>
②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율 인하(15% → 10%) 및 적용기한 3년 연장(2024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등</li> <li>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기입요건 완화(5년 이상 → 3년 이상)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2024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li> <li>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등 조세특례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남성 포함·동일 업종 취업요건 폐지 등)</li> </ul>
③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란우산공제 공제한도 상향(소득금액 1억 원 이하 100만 원 상향) 및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 소득공제 허용</li> <li>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024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li> <li>대체취득을 위한 건설기계 처분이익의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1천만 원 초과분·3년 분할 과세)</li> </ul>

## 3. 조세체계 합리화

구분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30억 원 초과 50% → 10억 원 초과 40%)·하위 과세표준 조정 (10% 세율 적용구간: 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li> <li>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인당 5천만 원 → 5억 원)</li> <li>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년 1월 1일 → 2027년 1월 1일) 및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의제 방법 허용</li> <li>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연결법인은 당기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 계산</li> <li>⋮</li> </ul>

구분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세율 조정(최저세율: 2억 원 이하 9% → 200억 원 이하 19%)</li> <li>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li> <li>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 조정(금융·일반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li> </ul>
② 비과세 감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인하(1.3% → 0.65%, 2027년 이후 1% → 0.5%)</li> <li>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세무대리인·세무법인 공제한도 축소</li> <li>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2024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고용증대 추가감면율 인상(50% → 100%)·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감면율 인하(일반 50% → 25%, 청년100% → 75%)</li> <li>수도권 내로 공장 이전 시 세액감면 대상지역 축소(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내 →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li> <li>지방 이전 세액감면 업종요건 합리화(이전 전·후 동일 업종 → 이전 전 2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 업종 등)</li> <li>중소기업 범위에서 부동산임대업·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제외</li> <li>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제외</li> <li>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공제·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등 적용기한 종료</li> </ul>
③ 세원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세점이 송객수수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li> <li>관세 성실신고확인·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직전 2개 연도 평균 수입금액 3천만 달러 미만 사업자 선택 적용)</li> <li>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공급가액의 1% → 2%, 간이과세자 0.5% → 1%)</li> <li>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추가</li> <li>거주자 판정기준 보완(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주 → 전년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83일 이상 거주 등)</li> <li>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국세청장의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li> <li>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li> <li>납세의무 승계 회피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의 상속 재산 간주</li> <li>관세 수입 무신고의 부과제척기간 7년 신설·부정행위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40% → 60%)</li> </ul>

##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구분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납세자 편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채 등에 투자한 국외투자기구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의무 면제대상에 국외사모펀드 추가</li> <li>원천징수의무자 외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 및 절차 신설</li> <li>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 허용·심사대상에 실행 관세율 추가 등)</li> </ul>
② 납세자 권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대상에 소송·상호합의 등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자 등 추가</li> <li>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과소신고한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li> <li>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 이월공제하는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공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 적용</li> <li>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조사 15일 전 → 20일 전)·불복청구 등에 의한 재조사는 7일 전 사전통지</li> </ul>

## 5. 기타

구분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소득세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자 등에 의한 의제배당 산정 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행사 당시 시가로 취득 가액 적용 등</li> <li>배당소득의 범위에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금액 포함)의 감액배당 포함 등</li> <li>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이월공제 대상에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배당금액 포함 명확화</li> <li>연결집단이 중견기업 요건 충족 시 중소·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견기업 규정 적용</li> <li>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에 상용화·사업화된 제품·기술·서비스 등을 단순 보완·변형·개선 하는 활동 추가</li> <li>R&amp;D 출연금 과세특례 대상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 추가</li> <li>기술혁신형 주식 취득 세액공제 합리화(기술가치금액의 10% → 5% 공제·분할 취득기간: 최대 2년 → 3년)</li> <li>창업중소기업 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탄력고용 지원의 중복배제</li> </ul>

<b>②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얀분계산 예외 신설(건물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하거나 타법령에서 가액을 정한 경우)</li> <li>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연금계좌납입액의 10% 세액공제 (1억 원 한도)</li> <li>1천만 원 증여재산공제 친족 범위 합리화(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li> <li>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추가</li> </ul>
<b>③ 부가가치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 치료 목적인 동물 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li> <li>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호텔업 →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li> </ul>
<b>④ 국제조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li> <li>정상가격 조정 경정청구 제출자료에 정상가격 입증자료 추가 및 경정기한 연장(2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등</li> <li>글로벌최저한세 보완(고정사업장 등 정의 명확화·조정대상조세 계산 관련 결손취급 특례 신설 등)</li> </ul>
<b>⑤ 관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연합 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도국 출입국가 대상 특혜관세 한시적 허용(콩고·방글라데시 등 45개국)</li> <li>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추가(과세관청 외 기관이 직무목적으로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조사 등)</li> <li>내국물품을 보세구역 장치 의무대상에서 제외 및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기간의 1년 연장 가능</li> <li>지식재산권 보호대상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 추가 등</li> </ul>
<b>⑥ 국세 제반 분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과세관청의 종액결정·경정처분 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3개월 이내)</li> <li>과세예고통지 배제사유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를 추가</li> </ul>

#### 관련 자료 보러가기 (Click)

보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아래 링크 및 삼일Pw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Tax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Tax News Flash: 2024년 세법개정안」 - [삼일PwC, 2024. 7. 25]



# Governance

## 기업지배구조

# 전사적 위험 관리(ERM) 감독을 위한 이사회 가이드

## 회사는 어떻게 지속가능하며 실용적인 ERM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을까?

잘 구축된 ERM은 가치 중심의 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회사가 방해 요소를 헤쳐 나가며 계속해서 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ERM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명확한 가치 명제를 포함하며, 조직 전반에 걸쳐 장기간 동안 ERM을 발전시키고 통합하며 제도화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위험 관리 감독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이자 영향력을 보유한 이사회는 경영진이 수립한 위험 관리 프로그램의 목표와 활동, 이러한 활동이 어떻게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전사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이사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경영진의 위험 관리 절차를 감독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이사들은 효과적인 ERM 프로그램의 필수 구성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회사가 고도화되고 정교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지, 혹은 최근에 도입하여 성숙도가 낮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이사회는 현재 구축된 위험 관리 역량을 파악해야 한다.



## 1. 회사 전략과의 연계:

위험을 전략과 분리하지 않고, 전략 계획 및 실행의 일부로 위험 감독

오늘날 기업들이 직면한 복잡성과 변화의 수준은 위험을 고려한 전략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이러한 외부 트렌드 및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주기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위험 관리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된 노력들이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수동적인 규제 준수에만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이사회는 경영진이 전략에 부합하는 위험 관리 역량을 개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 전략과 목표를 바탕으로 위험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라

전략적 위험은 때때로 회사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ERM 프로그램은 전략적 의사 결정과 계획에 통합되어 있지 않다. 위험 기반의 전략 조정은 위험과 그 완화 방안이 전략적 논의의 핵심 요소가 되도록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 기업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위험을 식별하라

경영진은 종전에 사용하던 고립된 위험 분류에서 벗어나서, 각각의 전략적 우선순위나 도전 과제에 대한 핵심 위험들을 식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과 목표와 그 달성을 위해 관리해야 할 위험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만들 수 있다. 경영진이 위험과 관련된 전략적 목표를 함께 보고한다면, 이사회는 위험과 전략적 성과 사이의 연관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간단한 방법은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험 관리의 공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2. 위험 전략 및 거버넌스:

### 위험 관리 및 감독의 명확성 확보

문서화된 규정이나 계획의 마련은 위험 관리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화 단계로, ERM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 규정이나 계획은 좋은 출발점이지만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위험 전략과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 전략 및 거버넌스 체계는 사업부, 경영진, 이사회가 사업 위험을 식별, 평가 및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 지침과 구조를 제공한다. 가장 기본적인 체계는 다음 내용들을 포함하며, 통상적으로 이사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친다.

- ERM 프로그램 목표
- ERM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 리스크 거버넌스 및 보고 구조(이사회 감독 및 역할 배분 포함)
- 이사회부터 각 부서 리더에 이르기까지, 위험 관리 역할, 책임 및 권한의 명확한 정의
- ERM 프로그램 목표를 지원하는 내·외부 자원과 프로세스를 포함한 운영 모델

### 전사적 위험 관리(ERM) 감독

####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 회사 전략, 목표 및 관련 위험 프로파일 검토 및 승인
- 경영진과의 토론을 통해, 회사의 핵심 위험,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 새로운 위험 및 상호 관련된 위험 이해
- 경영진이 적절한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
- 이사회의 위원회 구조와 감독 절차가 주요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에 적절한지 확인
- 이사회 내 위원회 중 하나(일반적으로 감사위원회 또는 리스크위원회)에 경영진의 위험 관리 설계와 실행 감독 권한 부여
-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 수용범위 및 위험 정책의 검토 및 승인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 전체 이사회를 대신하여 위험 관리 프로그램의 감독 수행
- 분기별로 위험 관리 보고서를 검토하여 위험 우선순위, 위험 관리 계획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 진행 상황 점검
- 위험 관리 프로그램 설계를 검토 및 승인하고, 회사 목표, 정책, 절차 및 업계 관행과 비교하여 회사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
- 필요시 추가 위험 평가 절차 수행을 요구
- 매년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체 이사회에 위험 관리 프로그램 활동 및 진행 상황 보고
- 어떻게 ERM이 3선에 걸쳐 다양한 사업 부문 및 기능 부서와 조정하고 협력하는가? 통제 및 검증 기능은 어떻게 연계되어 작동하는가?
- 위험 관리 역할과 책임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되는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교육이 제공되는가?

### 3. 공통의 위험 언어:

#### 위험에 대한 일관된 관점

ERM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리더는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통된 위험 언어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황에 대한 단일의 설명과 위험에 대한 일관된 관점이 형성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 관리 용어와 절차의 표준화를 모색해야 한다.

#### 공통의 위험 언어와 접근 방식 정립

##### 위험 관리 용어

- 전통적인 위험 관련 용어, 예를 들어 위험, 위험 원인, 위험 결과, 위험 영향 및 가능성, 위험 노출, 관리 능력 등은 위험을 전략 및 운영과 분리된 요소로 보는 인식을 강화했다. 이에 많은 위험 관리 임원들이 전문 용어 사용을 줄임으로써 ERM의 실무적인 수용을 돋고 위험 정보의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핵심은 이사회를 비롯한 조직의 모든 부문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간결한 위험 관리 정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위험 분류 체계 (Taxonomy)

- 회사의 위험을 분류하는데 사용되는 범주는 회사의 특성에 맞춰야 하고,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며 안정적인 위험 범주를 설정하여 위험 분류 및 집계에 활용해야 한다. 위험 분류 체계는 위험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위험 모니터링 및 보고를 강화하고 위험 데이터로부터 더 깊은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을 준다. 위험 분류 체계는 위험 대장(Register), 목록(Inventory) 또는 유니버스(Universe)로도 불리며, 조직이 다양한 위험 유형을 논리적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범주에는 전략, 운영, 재무, 컴플라이언스는 물론이고 지속가능성과 같은 새로운 분야도 포함될 수 있다.

##### 위험 관리 접근 방식

- 회사의 위험 거버넌스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영진은 위험 관리를 위한 명확하고 문서화된 접근법을 제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접근법에는 조직 전체에 걸쳐 위험을 식별·우선순위 결정·관리·모니터링·보고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포함된다.

## 4. 전사적 위험 평가:

###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의 위험 우선순위 결정

전사적 위험 평가 결과를 위험 관리 과정의 최종 결과물로 생각하는 회사가 많지만, 이는 ERM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위험 평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험 기반의 전략 및 대응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위험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관련 역량을 분석하는 것이다.

#### 가장 중요한 위험에 집중

이사회가 모든 위험을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우선순위 선정 프로세스는 이사들이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영진의 위험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는 현재의 위험 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재무, 운영, 회사의 평판, 전략적 목표 달성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특유의 요소 등이 포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로서 경영진과 이사회가 주목해야 할 위험은 10~15개 이하로 선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위험 관리와 감독은 회사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 지속적인 위험 평가

전사적 위험 평가와 같은 ERM 프로그램 활동을 1년에 한 번만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에 유용한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사회는 회사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위험 환경을 검토하고 새로운 위험을 평가하는 경영진의 프로세스를 검토해야 한다. 즉, 이사회는 ERM이 회사의 사업과 함께 움직이도록 할 책임이 있다.

## 5. 위험 대응 계획:

### 높은 우선순위의 위험 관리

위험 평가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은 주로 위험 대응 계획이다. 이 계획은 위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회사의 조치들을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전략적 목표 및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와의 연계성과 더불어, 위험과 근본 원인, 잠재적 결과, 상호 연관된 위험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이는 위험 정보의 기준점으로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위험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단계를 적시에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위험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관리 방법이 결정되며, 중대한 위험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될 것이다.

#### 위험 관리 책임 정립

이사회와 경영진은 기업 성과를 검토하는 빈도와 동일한 빈도로 위험 대응 현황 보고서를 검토해야 한다. 위험이 전략적 목표와 연계되어 있다면, 위험 대응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6. 지속적인 모니터링:

### 위험 변화 인지

#### 위험 수용범위 및 주요 위험 지표 설정하기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위험 수용범위 체계와 일련의 주요 위험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다. 위험 수용범위는 조직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정의하고, 관리해야 할 위험의 범위를 설정한다. 주요 위험 지표는 측정가능한 지표로서, 미리 설정된 한계치 내에서 위험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지표는 조기 경고 신호 역할을 하여 위험 수용범위로부터의 잠재적 이탈을 알리고 적시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 이사회의 위험 관리 감독

- 이사회는 위험 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감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사회의 책임은 다음을 포함한다.
  - 위험 수용범위에 대한 문제 제기. 경영진이 조직의 위험 수용범위를 결정하겠지만, 이사회는 해당 위험 수용 범위가 회사의 전략과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위험 모니터링. 이사회는 경영진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기 위험 보고서의 검토, 위험 지표 평가, 위험 허용 범위 대비 위험 노출 정도의 모니터링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사회는 새로운 위험, 잠재적 영향 및 완화 전략에 대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

#### 관련 자료 보러가기

본 자료는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에서 발간한 「거버넌스 포커스 Vol.25」을 요약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및 삼일Pw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포커스 Vol.25 – 2024년 2분기](#)」(Click)

# Contacts

## 삼일PwC경영연구원

이 은 영 Managing Director  
02-709-0824  
eunyoung.lee@pwc.com

## Sustainability

권 미 엽 Partner  
02-709-7938  
miyop.kwon@pwc.com

## GAAP

홍 윤 기 Partner  
02-709-7901  
karen.hong@pwc.com

## GAAS

박 성 훈 Partner  
02-709-4786  
sung-hoon\_1.park@pwc.com

## Tax

조 영 현 Director  
02-3781-9238  
young-hyun.jo@pwc.com

## Governance

하 미 혜 Managing Director  
02-709-8599  
mihye.ha@pwc.com

[www.samil.com](http://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408A-NL-008

© 2024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